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2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호연,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최민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확보 정비기반시설의 조기 조성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및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자원구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현금기부채납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정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 시설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선 투자 하여 조성하고 사업 종료 후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현금기부채납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정비기반시설을 조기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에 선 지출된 도시재생기금 원금 전출을 신설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선 지출된 도시재생기금 원금 전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략)</p> <p>②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1. (생략)</p> <p><u><신 설></u></p> <p><u>12.</u> (생략)</p>	<p>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선 지출된 도시재생기금 원금 전출</u></p> <p><u>13.</u> (현행 제12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확보 정비기반시설의 조기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선 투자하여 조성하고 사업 종료 후 시행자로부터 받은 현금기부채납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출 대상의 기반시설에 선 지출된 도시재생기금 원금 전출을 신설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안 제5조제2항)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